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금품 모집 대상 공익적 목적에 “체육 진흥” 명시〉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61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06. 30.
3. 회 부 일 : 2025. 07.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범위에 “체육의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u>과학</u> 등의 진흥 2) ~ 8) (생략)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1) ----- <u>과학, 체육</u> ----- 2) ~ 8)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를 공익 실현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기부금품 모집의 대상이 되는 공익 목적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¹⁾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금전이나 물품 등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모집등록을 하여야 함.²⁾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가 운영되었으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³⁾과 2006년 법률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등록제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는 법률명에 “기부문화 활성화”가 명시됨으로써 기부문화의 조성⁴⁾과 확산이라는 입법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음.

《기부금품법상 기부 공익적 목적의 연혁》

법령명	기부 목적 범위	비고
기부통제법 (1949.11.24. 제정)	공익 목적 사업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1951.11.17. 제정)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구휼, 국방기재 헌납, 상이군경 위문·원호, 자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1962.7.24. 개정)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구휼, 국방기재 헌납, <u>현충기념시설 설치와 자선,</u> <u>전국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 올림픽 선수파견 기금,</u> <u>국제적 반공기구 설치</u>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1970.8.12. 개정)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구휼 국방기재 헌납,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 전국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 올림픽 선수파견 기금, 국제적 반공기구 설치, <u>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 파견</u>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1995.12.30. 개정)	<u>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재난 구휼,</u> <u>자선, 대통령령 인정 사업(별도규정없음)</u>	<u>허가제</u> 로 변경,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u>축소</u>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3) 법이 의도하는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은 모집목적의 제한보다도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모집행위의 절차 및 그 방법과 사용목적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집목적의 제한을 통하여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3조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전원재판부 96 헌가5, 1998.5.28.).

법령명	기부 목적 범위	비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06.3.24. 개정)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재난 구휼, 자선,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건전 경제 활동, 환경보전, 사회적약자 권익신장,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협력, 건전 시민사회 구축, 기타 대통령령	등록제로 변경, 등록사업 확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 개정)	별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등 재난 구휼, 자선,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건전 경제 활동, 환경보전, 사회적약자 권익신장,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협력, 건전 시민사회 구축, 대통령령 <u>근로자 고용·생활,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이에 준하는 공익 목적</u>	대통령령에서 목적 추가 규정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 체육인의 인권 보호,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체육 진흥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⁴⁾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국제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체육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기부금 총액이 약 16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 분야로 유입되는 기부금은 매우 적은 실정이며, 특히 장애인·유소년체육 등 재정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⁵⁾

4)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대한체육회, 체육 기부 활성화·후원사 제도 개선 등 입법 과제 제시」, 뉴시스, 2028.8.11.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811_0003286124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체육 분야의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체육 분야의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체육의 진흥”을 기부금품 모집의 공익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체육 분야에서 민간 기부금품의 공식적인 모집과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체육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에서도 교육·문화·예술 진흥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적 등과 연계하거나,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⁷⁾를 근거로 공익 목적의 체육 관련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기는 하나,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민간 자금 유입 촉진으로 체육 분야의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고, 노인·장애인 등 소외 계층 지원과 지역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목적 제한의 최소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6) 최근 3년간 체육 관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총 2건): 경기도 장애인체육인 지원('23년), 서울시 유소년 체육시설 조성('24년)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체육 지원, 국제 스포츠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 기부 기반 확충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정안이 체육 진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